C13

1

# 興德王 服飾 禁制의 研究

## ——新羅末期 服飾 再構를 中心으로——

金　東　旭*

序　說
I. 羅制 服飾의 基本 構造
II. 新羅의 中國 服飾 借用
III. 新羅 服次의 唐物과 土產
IV. 新羅의 服色 禁制
V. 頭衣 및 頭飾
VI. 上　衣
VII. 帶
VIII. 裳·袴
IX. 足衣(靴·履·襪)
X. 禁制以後의 服飾構造의 變遷
XI. 現存 民俗과 興德王 服飾 禁制
結　論

## 序　說

通溝 내지 北韓에 散在하여 있는 古墳 壁畵를 통하여 4·5世紀의 高句麗 服飾을 視覺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多幸한 일이다. 新羅服飾에 대하여는 梁山 夫婦塚, 金冠塚 등 많은 古塚 遺物로 해서 腐蝕을 免한 裝身具 등을 통하여 그 一斑이나마 볼 수 있으나, 한걸음 統一新羅期 이후에 접어들면 이런 古墳, 古塚도 不分明하고, 圖像, 石物도 稀貴해서 그 服飾 一般에 대하여 參考 推定할 資料조차도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다행히 三國史記 卷第33 雜志2 色服 條에 興德王 服飾禁制가 남아 있다. 이것이 禁制이기 때문에 당시의 服飾을 構造的으로 把握하기는 힘드나 이를 뒤집어 보면 얼마간의 再構는 可能하지 않을까 하여 이 論文을 執筆하기로 한다.

이 禁制는 興德王 9年(大和 8年) 西紀로 834年에 公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前文 下教가 붙어 있다.

「教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尚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教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固有常刑」(1)

* 延世大學校 文科大學 教授, 韓國文學(文博)

(1) 三國史記 第33 雜志第2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只尙異物之珍奇」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唐의 絹織物이 新羅에 들어와 서로 奢侈를 競爭하다시피한 世情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禁制를 申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禁制는 衣服에만 限한 것이 아니고, 色服에 이은 「車騎」, 「器用」, 「屋舍」 등 전반에 걸친 것으로 相當히 치밀한 等級別 禁制이다.(2)

그러나 禁制라 하는 것은 어느 時代에나 治者의 立場으로 設定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기에는 상당한 難點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李朝에 있어서도 「經國大典」에 禁制를 싣고 있으나 每王마다 이에 대한 申飭 傳旨를 내리고 있음을 보면, 人間의 奢侈本能으로 그것이 제대로 履行되지 않았던 것을 推測할 수 있다.

우리는 禁制 그 자체보다 禁制를 위하여 設定한 項目에서 新羅 服飾을 構造的으로 把握하고저 한다.

그러나 이 禁制가 가지는 意義는 당시의 社會相 속에서도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新羅의 政治體制를 史家들은 貴族王國이라 한다. 新羅는 이미 爛熟의 期를 지나쳐 자체내의 權力鬪爭이 激化하려는 時期이기도 하다. 이 禁制를 발표한 2年뒤에 興德王이 薨去하며 王權繼承을 위한 王弟와 新王과의 鬪爭이 일어난다. 이보다 3年前에는 나라에 饑饉이 일어나 國力도 疲弊하였지만, 이런 下剋上의 風潮에 대한 制動力으로 이런 禁制을 내린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禁制의 根本에 숨어 있는 것은 骨品制를 중심으로 한 身分制度의 옹호이었다. 이 骨品制도 몇代後의 眞聖女王의 登極을 最後로 紊亂해지고, 地方에 있어서의 豪族의 跋扈가 시작된다.

興德王은 몇代에 걸친 短命의 王位를 물려 받은 것이지만, 그는 이런 禁令을 통하여 어떤 秩序를 回復할려고 애썼는지 모른다. 그는 根本的인 面에서는 唐의 禁令을 借用했다고도 보겠지만, 王族들 가운데에 미만하고 있는 下剋上의 風潮와 新進豪族의 上昇을 막아보려는 意圖로써 그 隸下에 있는 官員과 豪族에 等差를 둘려고 한 것 같다.

## I. 羅制 服飾의 基本 構造

新唐書 東夷傳 新羅 條에,

「男子褐袴 婦長襦(見人叉跪 則以手据爲恭) 不粉黛畜美髮 以繚首 以珠綵飾之 男子翦髮 鬻冒以黑巾」

이라고 있다. 이 記錄은 보다 唐服飾 襲用前期의 記錄으로 보여지나, 如前한 그 후의 平民들의 服飾을 보여 주고 있다. 男子의 褐袴는 우리의 基本服飾이니 論外로 하고라도, 美髮로 繚首하여 珠綵裝飾한다 함은 李如星도 그의 「朝鮮服飾考」에서 辯證하였지만, 北史에는 「婦人辮髮繚

(2) 同上

頭 以雜綵及珠爲飾」라고 있으니, 이는 「얹은머리」를 말하는 것으로, 高句麗나 百濟와 같은 髻制로 李朝末까지 綿綿히 이어온 制度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髻制가 唐代에 唐에서도 이와 類似한 髻制가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男子剪髮이라 함은 幞頭(黑布)를 썼을 때 머리가 밖으로 흩어져 나오지 아니해서 그렇게 表現했는지 모른다.

여기 褐이라 한 것은 說文에 「短衣」라 하였고, 唐書 車服志에 「士服短褐」이라고 하여 唐代의 賤士의 服이면서, 이 褐이라는 字義가 主로 「毛布의 衣」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羅代에 우리의 特性으로 보아 奢侈品인 罽를 貴族들에 입혔을 뿐 毛布가 平民에게 널리 입혔다고 볼 수는 없다. 혹 겨울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短衣를 입었을 可能性은 있다.

이에 비하여 婦人의 長襦는 男子의 褐 즉 短衣에 비하여 袍에 가까운 긴 上衣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服飾은 平民의 服飾構造를 밝힌 것이나, 이것과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오는 平民 服飾과는 相當히 다르다.

여기서 平人은 머리에 絹布 幞頭를 쓰고, 內衣(中單?)를 입고, 그 위에 表衣(袍?)를 입고 아래에 袴(바지)를 입고, 銅鐵의 銙帶를 하고, 革靴를 신고, 鐵이나 銅으로 만든 靴帶를 하거나, 麻履를 신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 平民은 一般 庶民은 아닌 것 같다. 여기 平民은 一般 庶民과 四頭品 사이에 있는 無官者나 吏屬들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二重組織으로 보면, 內衣와 袴 革靴, 麻履 등이 國俗이고, 幞頭, 袍襴, 銅鐵, 革帶는 唐의 服飾이기 때문이다. 一般 庶民이 幞頭에 袍襴을 입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高麗圖經에 王도 燕居에는 白苧布衣를 입어 民庶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高麗時代에도 그런데 新羅時代에 庶民이 幞頭, 袍襴, 銙帶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보면 新羅 服飾의 基本은 「褐袴」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그 傳統은 李朝末까지 變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褐袴가 時代에 따라 저고리의 길이가 길고 짧은 差異는 있더라도 基本構造는 變함이 없기 때문이다.

羅代 平人女의 基本服飾은,

「머리에는 素牙角梳와 鍮石釵를 꽂고, 內衣와 袴에 表裳을 걸치고, 그 위에 表衣를 걸치고, 衣에는 襻, 裳이나 表衣에 綾絹의 帶를 하고, 襪을 신고, 襪袎가 있고 布는 15升以下 麻履(?)를 신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平人女도 一般 庶民女服과는 差異가 있다고 보아진다. 즉, 內衣와 袴가 基本服飾이고, 그 위에 입혀진 衣裳은 보다 儀禮的인 衣服이고, 다시 表衣는 더욱 더 儀禮的인 意識

을 加味한 옷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服飾 構造는 通溝 壁畵에 廚房에서 일하는 女子까지도 입고 있으므로 이를 國俗 服飾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興德王禁制에는 다시,

四頭品女는 ⊕ 半臂, 袴, 短衣 褙襠, 褾, 襻 (無內裳) (無冠)

五頭品女 ⊕ 內裳

六頭品女 ⊕ 冠 ⊕ 內裳

眞骨女 ⊕ 冠 ⊕ 內裳

을 덧붙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構造로 보면 이는 完全히 二重組織이라는 點이다. 平人女에 있어서는 平人男과 달리 바로 國俗 衣服이 아니었던가 한다.

平人女의 경우, 衣에 「襻」이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옷고름이다. 그러면서 表衣에 綾絹의 帶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唐代 衣服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 麻履는 國制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國制 衣裳밑에는 麻履를 신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男子의 境遇 平人男이 일반 百姓의 衣服과는 差異를 가지는 것을 보면 이 平人女의 경우에도 일반 百姓女의 의복과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內衣——裙——表裳

表衣——綾絹帶

의 對立으로 解決될 수 있다.

다만 이런 構造가 冬·夏服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이를 현재 가름할 수 없어 一律로 다루기로 한다.

이를 圖表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 숫자는 品표시)

<男 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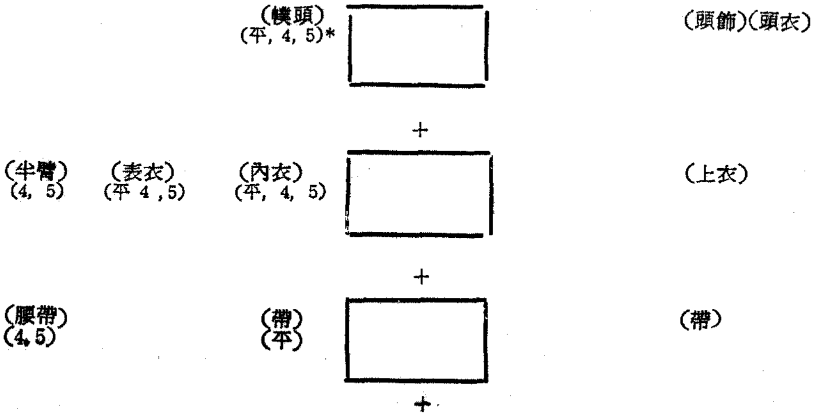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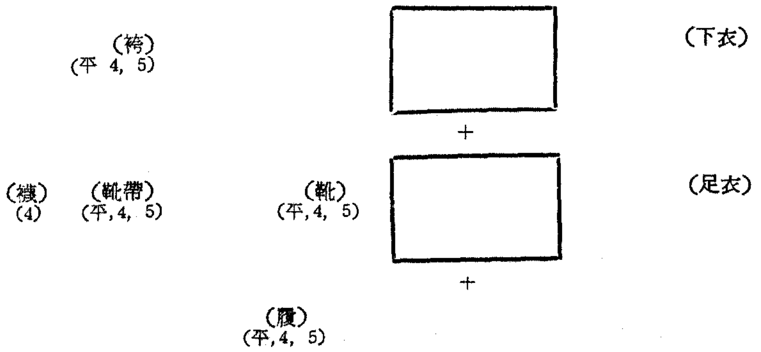


<女　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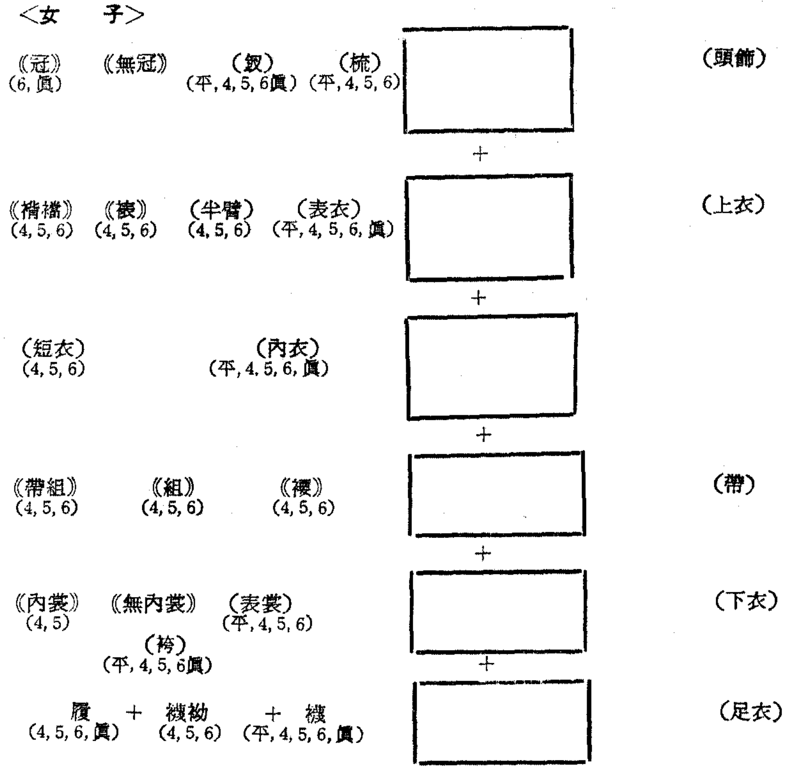


日本도 當時 男女할 것 없이 唐制를 採用하였으니 男制은 거의 唐服과 같고, 女服도 唐制를 그대로 採用하고 있다. 女官의 禮服은,

「背子(褙襠)(괄호안:興德王 禁制 안에 있는 名稱)

大袖(上衣)

小袖(內衣)

裙 (表裳)

褶 (內裳)

紕帶(帶)(褸襻)

蔽膝

比禮(褑)

襪 (소)

舃 (履)[3]

로 되어 있어 이것이 禁制의 女服과 對應을 하고 있다. 다만 新羅의 경우, 蔽膝이 보이지 않으나 新羅에도 朝服에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信憑할 만한 出土品으로서, 唐服飾 襲用前의 貴族 服飾의 梁山「夫婦塚」의 婦人의 遺骸 옆에서 出土한 것은 그 報告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婦人의……頭部의 位置에 한쌍의 華麗한 垂飾이 있는 耳飾이 있고, 그 耳環에도 步搖가 달린 金의 空玉이 하나씩 달려 있다. 그 사이 목에서 가슴 언저리에 華美한 頸飾(목걸이)의 한 줄이 있다. 中心에 紅瑪瑙의 曲王을 두고, 純金空玉, 水晶, 瑪瑙 등 각종의 玉을 銀線으로 連結하고 윗 부분을 걸경쇠로 한 優美華麗한 耳飾이고, 腹部에서는 銀帶가 고리로서 遺存하고, 銀의 透彫가 있는 33개의 銙와 아름다운 걸쇠로 되어 있다. 허리部分의 왼편에 기울어 좀 큰 腰佩가 垂下하고, 楕圓形과 長方形을 連結한 銀製이다.」[4]

이는 新羅統一 前期의 婦人 服飾으로 여겨지거니와, 그 華麗한 服飾構造를 엿볼 수 있다. 1971年 8月에 出土한 百濟 武寧王陵의 遺物도 報告書가 나오지 않아서 言及은 할 수 없으나, 中間報告에 의하더라도 王과 王妃의 權力에 比肩하는 그 奢侈 華麗함은 놀라울 程度이다.

統一前期를 基準하고, 이번 武寧王陵 出土品과의 相關關係에서 다루어 본다면 三國史記에 引用된 唐書의 百濟王服,

(冠) 烏羅冠 金花爲飾
(袍) 大袖紫袍
(帶) 素 皮 帶
(袴) 青 錦 袴
(履) 烏 革 履

등이 이 武寧王陵 出土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構造는 新羅末期와 比較하면 烏羅冠 金花爲飾이 幞頭, 折上巾으로 素皮帶가 硏文白玉으로 바뀌었을 뿐, 大袖紫袍와 青錦袴(青이 赭黃으로?) 등은 變함이 없다고 본다. 이 武寧王陵에서 出

(3) 江馬務, 日本服飾史要, p. 22
(4) 梁山夫婦塚發掘報告書 30面

土한 冠飾은 王과 王妃 二具이다. 처음에 이 冠飾을 金冠이라 잘못 報道되었으나, 이는 烏羅冠 앞에 세우는 立飾으로 金冠은 아닌 것이다. 百濟의 武寧王은 西紀 522年에 薨去하였고, 法興王과 同時代이므로 新羅의 公服制度도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 Ⅱ. 新羅의 中國 服飾 借用

新羅의 金冠冢 기타의 古墳에서 쏟아져나온 遺物들은 世界에 冠絶하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新羅는 中國과의 交易을 通하여 佛教를 들여오고 中國服飾을 導入하기에 이르러 法興王 7年(520) 春 3月에 律令을 頒布하고, 百官의 公服을 定하고 「朱紫之秩」인 秩序等威을 定하였다. 그러나 그의 欲望은 三國統一이었다. 그러자니 中國勢力을 利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武烈王 金春秋는 眞德王 2年에 中國에 들어가 外交의 禮를 다하고, 唐太宗을 私私로이 보고 請兵함과 同時에 章服을 中國制에 따라 고치기를 請하며 內府에서 珍服을 내어 春秋와 從者에게 賜한 것이다. 이후 春秋가 海上에서 高句麗 邏兵을 만나 그의 從者 溫君解가, 「高冠大衣」로 船上에 앉아 害를 당한 것은 有名한 이야기다.(5)

이리하여 眞德 2年 春正月부터, 「始服中朝衣服」하고, 4年 4月에는 下教해서 眞骨이상은 牙笏을 잡게 하였다.(6) 이에 대하여도 仔細한 기록이 없으니 알길이 없으나, 牙笏을 잡았으니 唐制袍襴을 입은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의 衣服은 王인 眞德王이 「唐 開府儀同三司新羅王」의 贈職을 받았고, 春秋로 太宗武烈王이 된 뒤에 같은 職階를 받았으므로 이를 起點으로 하여 唐制의 章服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들어온 中國服飾과 別다른 差異는 없었을 것이다.

三國史記에 보이는 바 文武王 3年은 百濟 滅亡의 해이기도 하지만 이 때 新羅에서도 衣裳을 지어서 留鎭唐軍에게 供給하였다.(7) 이를 보면 당시의 男子服飾에 裳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裳이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하여는 適確히 알 수가 없지만, 萬若 裳이 있었다 하면 處容服飾의 裙이나, 高麗圖經의 使臣에게 供給하는 「紵裳」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女子의 裳과는 다르다. 오히려 女子의 고장이와 같은 것이다. 處容冠服의 경우 裙의 무릎에 四角花樣의 蔽膝이 달려 있다. 이것은 男子의 裙裳을 밖에 입은 證左이다.

다시 文武王 4年正月에는 下教해서 婦人도 中國 衣裳을 입도록 하였다.(8)

---

(5) 三國史記 卷第5 新興本記 第5
(6)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記 第6 文武王上
(7)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記 第六
(8) 同 上

이는 境內의 모든 人民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內命婦에 내려진 命令으로 보고자 한다. 이 制度는 바로 興德王禁制에 나타나는 女子衣服이 되겠다. 그러나 一般 人民은 二重組織으로서 舊俗 衣服을 입었고 命婦도 燕居 때에는 같았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新羅가 唐의 藩屛이 되자 每年의 遣使에는 반드시 唐의 賜衣가 있었고, 이것이 成習이 되매 新羅의 服飾制度는 表面으로 變質되어 갔다고 보인다. 文武王 5年 2月에는 伊飡文王이 卒하매 唐에서 使臣이 來朝하여 兼하여 紫衣一襲과 腰帶一條, 彩綾羅一百匹, 綃二百匹을 進贈하고 있다.[8]

다시 聖德王代에는 22年 3月에 遣使 入唐하여,

「美髢」「朝霞紬, 魚牙紬」

등을 獻納하고 있다.[9] 이에 대하여 唐 玄宗은 「物旣精麗」라고, 稱讚하고 다시 王에게 錦袍, 金帶, 綵素 共 2,000匹을 賜與하고 있다.

다시 29年에는 玄宗이 「紫袍」「錦細帶」 등을 보내 오고32年에는 「紫羅繡袍」「金銀鈿器物」 등을 보내오고, 33年에는 入唐使臣에게 「緋襴袍」「平漫銀帶」를 내리고, 景德王 1年에는 入唐한 王弟에게 「綠袍銀帶」를 내리고, 元聖王 3年에는 妃의 服으로,

「押金線繡羅裙衣」

등을 내리고 있다.[10]

이런 것을 綜合하여 보면 唐에서 新羅에 내린 王服으로는 「錦袍」「紫袍」「紫羅繡袍」 등이고, 王妃에게는 「押金線繡裙衣」이고, 帶는 金帶, 錦細帶 등이고, 使臣들에게 地位의 高下에 따라 紫袍, 綠袍, 銀帶 등을 내리고 있다. 新羅에서 唐에 보낸 것은 女子의 加髢用 美髮과 土產으로 朝霞紬, 魚牙紬 등의 紬類를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日本으로부터 「錦」의 貢物을 받고 있다.

다시 新羅는 三國統一이후 唐軍마자 몰아내고 唐의 册封을 받으며 밖으로 外交에 힘쓰고 안으로 制度를 擴充하여 가워 爛熟期에 들어간다.

神文王 6年(686 A.D.)에는 遣使入唐하여 「禮記」를 請하매, 則天武后는 所司에게 命하여 「吉凶要禮」를 寫本으로 하여 보내왔다.

이는 禮制의 中國化를 꾀한 것이니 여기에 들어있을 服飾도 金春秋가 齎來한 唐의 服色이 이런 禮制와 더불어 使用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禮制의 整備는 上下 等威의 秩序가 갖추어 보려는 意圖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禁制가 나온 興德王代는 新羅로 해서는 命運이 조여들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新羅는 興德王代로부터 一世紀後에 亡하였지만 千年의 社稷도 이제 기우려지려는 兆朕이 보이

(9) 三國史記 卷第 8 新羅本記 第 8
(10) 이상 다 三國史記에서 引用한 것이나 일일이 註記하지 않는다.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京都의 貴族의 奢侈는 唐과의 交通이 잦아짐에 따라 極에 達하였다.

이 王의 前王인 憲德王代에 態川州都督 憲昌이 謀反하여 國號를 「長安」이라 하는등 어수선한 일이 있었고, 다시 憲昌의 子 梵文과 高達山賊 壽神 등이 謀叛하여 楊州(平壤)에 都邑을 세울려고 한 事件 등이 잇달아 일어나고, 天地의 異變이 잦았다. 興德王이 即位한 다음에도 이러한 不安한 異變은 그치지 않았으며, 이 服飾 禁制가 나기 2年前 6年 7月에는 入唐한 王子 能儒가 돌아오다 바다에 溺死한 事件이 있었다. 7年 春夏는 가물어서 땅이 빨갛게 탔다. 天은 正殿을 避하고 內外獄囚를 大赦하였고, 7, 8月에 가서 겨우 비가 왔으나, 이로 말미암아 國內에 盜賊이 遍起해서 10月에는 王이 朝臣을 파견하여 安撫할 程度였다.

8年에도 國內가 大飢하고 人民들이 많이 疫死하였다. 이러한 版局이라 王은 奢侈를 禁壓할 意圖에서 이런 禁制를 내린 것이다.

이 禁制는 服飾으로부터 始作하여 器用 屋舍에 미치고 있으나, 이 禁制는 中國의 禁制를 援用한 느낌도 드나 現實的으로 新羅가 處해 있는 社會的, 經濟的 危機를 背景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禁制는 新羅의 貴族들이 얼마나 華麗한 生活을 하고 있는가를 裏證해주는 좋은 資料이기도 하다. 여기서 援用된 奢侈品目은 服飾은 勿論이요, 車騎, 屋舍에 있어서도 그 裝飾品들은 大部分 國產이 아닌 海外에서 들여온 異物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奢侈相이 있었기에, 얼마후 憲康王代에 5年 王이 月上樓에 올라가 四望하니,

「京都民屋相屬 歌吹連聲」

하므로 王이 侍中 敏恭를 돌아보아,

「孤聞今之民間覆屋以瓦不以茅 炊飯以炭不以薪 有是耶」[11]

라고 물으매, 侍中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는 三國遺事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景文王 9年에 王子 金胤을 入唐 謝恩케 한 方物 등은 그 物名으로 보더라도 華麗를 極하고, 新羅의 奢侈品 生產의 程度를 알 수 있다.[12]

이 禁制를 理解하기 위하여는 唐의 服飾 制度를 參考로 하여야 할 것이다.

唐에서는 武德 4年(西紀 621)에 衣服令을 내리고 群臣 冠服을 定하였다.

여기서,

1. 袞冕, 鷩冕, 毳冕, 絺冕, 玄冕을 一,二,三,四,五品의 祭服, 平冕을 郊廟武舞郞의 服으로, 爵弁을 六品以下 九品以上의 從祀服으로 하였다.

(11) 三國史記卷 第11 新羅本記 第11

(12) 三國史記卷 第11 新羅本記 第11

「……大花魚牙錦, 小花魚牙錦, 朝霞錦, 白氎布, 三十升紵衫段……金釵頭五色 綦帶并斑胸……」

2. 武弁으로써 武官 朝參 및 武舞郞의 冠으로 하고 衣緋絲布大袖白練襠褶䄌蛇起梁帶, 豹文大袴, 烏皮鞾 등의 服色을 갖추었다. 堂下鼓人의 服으로는 朱褠衣 烏皮履 등으로 하였다.
3. 皮弁에 朱衣, 素裳, 烏皮履는 文官 9品以上의 通用公服으로 하고, 弁上의 琪 및 服色으로 그 等級을 나누었다. 1品에서 5品까지는 9琪(琪는 玉)로부터 品級에 따라 하나씩 減하였다. 5品까지는 朱衣 素裳으로 服色을 삼고, 6品以下는 琪를 달지 않고, 6,7品은 綠色, 8,9品은 靑色을 입었다.
4. 遠遊冠, 進賢冠, 法冠, 高山冠, 委貌冠, 却非冠, 平巾幘, 黑介幘, 介幘, 平巾綠幘을 나누어 親王以下 流外官의 冠服으로 삼았다.
5. 具服(朝服)으로 5品以上 陪祭, 朝饗, 拜表. 大事의 服으로 하고, 6品以下는 劍. 佩, 綬를 덜었다.
6. 從省服(公服)은 5品以上의 公事, 朔聖朝謁, 見東宮服으로 삼았고, 6品이하는 鞶囊雙佩를 덜고, 一般은 絳紗衣를 입었다. 또 平巾幘, 黑介幘이며 白練裙襦, 白紗單衣 등이 있고, 武官은 兩當을 加하였다.

이상이 武德 4年의 制度였고, 貞觀 8年(634. A.D)에는 進德冠을 더하여 貴臣의 服으로 삼았고 貞觀 22年(648. A.D)에는 袴褶으로 朝服을 하였다.

또 貞觀 4年, 5年(630~631. A.D)에는 品官 服色을 改正하여,

3品以上 紫
5品以上 緋
6,7品 綠
8,9品 靑

으로 四色公服을 삼았고, 士人服에는 襴袖褾襈深衣를 加하고, 庶人服은 士와 같되 開䏶하여 䏶缺衫이라 하였다. 袍에는 아래에 襴을 加하여 緋, 紫, 綠 등으로 그 品階를 보이고 庶人은 白色으로 하였다.

그리고 諸官의 佩飾에는 綬, 印, 劍, 鞶囊, 白筆, 魚袋 등이 있어 각기 等差가 있었다.

則天武后 때에는 繡袍를 내어 文武大臣에 賜한 일이 있으며, 기후에 많은 增減이 있었으나, 玄宗이 開元禮를 制定 頒布하여 대체로 舊制를 좇았으나, 委貌冠을 없애고, 아울러 進德冠을 써 內外 文武百官 9品以上의 每年 10月後 2月前의 常服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아울러 袴褶도 입을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을 德宗 貞元15年(789. A.D)에 이르러 百官의 朔望 朝服을 袴褶으로써 함은 古禮에 맞지 않다 하여 이를 廢止하기에 이르렀다.(13)

(13) 王宇淸,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刊, 1967, pp. 187~192

이러한 唐自體의 服飾變遷史를 더듬어 볼 때, 이 興德王 服飾禁制는 唐도 末期的 服飾에 對應되는 것이지만, 唐制로서는 上衣에 衫, 襦, 袍, 襖의 類가 있고 下衣에 袴가 있었으나 이는 胡服에서 온 것이다.

衫에 대하여는 事物原始에,

「輿服志曰 唐馬周上議 禮無服衫之文 三代有深衣 請襴袖褾爲士人之上服 開胯者 名缺胯衫 庶人服之 旣令四揆衫也 蓋自馬周始 實錄曰 汗衫古之中單也 古者朝宴之服 必有中單郊享之服 必有明衣 至漢高祖 與項羽戰 汗透中單 遂名汗衫之始 唐志曰馬周以三代有深衣 因於其下著襴及裾名襴衫 以爲士服 令擧子所衣者 旣襴衫之始也」

라 있다. 元來 衫은 袖의 짧은 單衣를 말한다고 하나, 우리 國俗으로는 高句麗壁畵에 이미 袖端에 汗衫을 달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李朝까지도 奉命者나 新婦服 기타에 沿襲돼 있는 것이다. 이것과 中單을 汗衫이라고 하는 中國制와 對比될 것이다. 또 四揆衫은 李朝末에 學生及第服으로 一時 襲用되었다. 이것을 唐, 宋, 明을 내려온 擧子服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新羅末에 이 衫을 國人이 입었느냐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오는 「表衣」가 이 衫이냐 하는 문제이다. 衫이 春夏服이고 袍가 秋多服이라면 이를 갈라 表記해도 좋을 것인데, 그대로 「表衣」라고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袍는 釋名에 「袍丈夫著 下至跗者」라고 하였고, 唐代의 袍는 그 衣次에 錦繡綾羅가 있고, 이 禁制에도 六頭品은 綿紬紬布를 입고, 眞骨大等에 罽繡錦羅를 禁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夏服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또 袍는 唐에서 襴을 매한 縫掖袍와 缺胯袍가 있었으니, 從戎하는 者는 缺胯袍를 입게 하고, 軍에 있지않은 者는 長袍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唐의 服飾 制度를 參考로 하여 太宗 金春秋가 將來한 高冠大衣가 如何한 것인가에 대하여 現在로서 알 수가 없으나,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에 소재된 近來의 中國本土의 發掘에서 밝혀진 俑에서 그 近似한 服飾을 찾아 보는 것도 徒勞는 아닐 것 같다.

이는 1956年 西安 江慶獨孤夫人 先氏에서 出土한 것으로 高冠을 쓰고 長襦의 옷(衣)과 長裳을 입고, 冠을 손에 들고 있다.[14] 이 冠은 身體의 均衡으로 보아 높아 唐書 車服志에,

「高山冠者 內待省內謁者 親王司閤謁者之服也」

라고 한 高山冠이 아닌가고 推測하고 있다. 그러나 金春秋는 王의 使臣으로 갔으므로 이 謁者의 服을 입었다기 보다 다른 종류의 高冠을 썼음 직하다.

여기에 있는 長裳은 바로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二 太宗春秋公 條에,

「蹴鞠于庾信宅前 故春秋之裙 裂其襟紐 請曰入各家縫之……」

(14)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第3編, p. 28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裾袒가 떨어졌다는 故事와 相通하는 것으로 본다. 論者 男子着裳에 疑問을 揷하고 擊鞠에 裳을 입었겠느냐 하는 이도 있으나, 당시의 蹴球야말로 儀禮的인 것이고, 着裳하였다 하여 異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래에 唐의 服色과 新羅의 그것과 比較하기 위하여 原田淑人의「唐代의 服飾」에 실려 있는 最近의 出土, 發掘의 唐代 服飾을 더듬어 보려 한다.

圖 1

高髻로 結髮하고 高袖衣에 半臂를 걸치고 長裙을 쓴고 高鼻履를 신고 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供養의 꽃가지다. 안에 裙帶를 늘어뜨리고 있다.

<陜西省西安羊頭鎭村, 唐李爽壁畫人物服飾, 玄室 東壁侍女服飾 原田淑人, 唐の服飾 第3編 圖版1>

圖 2

幞頭를 쓰고, 缺胯袍를 입고 靴를 신고, 손에 笏을 잡고 右쪽을 보고 있다.

<陜西省乾縣 唐永泰公主石槨線刻畫人物의 服飾;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第3篇 20面>

圖 3

이는 侍男으로 幞頭를 쓰고, 反襟袍를 입고 손을 拱手하고 있다. 여기에 花紋이 보인다. 이 反衿袍의 反衿에는 花紋이 보인다.

<陝西省長安縣南星王村 唐韋洞墓壁畵人物服飾, 北室壁畵의 人物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第3篇, 12面>

圖 4

이 그림은 八人의 女子와 一人의 從僕으로 構成되어, 女子는 高髻 또는 雙髻로 結髮하고, 또는 半臂를 걸치고, 또는 領巾을 걸치고, 長裙高履 徐徐히 行進하고 있고, 列後의 從僕은 幞頭를 쓰고, 長袍를 입고 있다.

<陝西省乾縣 唐永泰公主墓 壁畵人物의 服飾:原田淑人 唐代の服飾 10面에서>

圖 5

이는 武官으로 幞頭를 쓰고, 襖를 입고 長劍을 차고, 烏皮靴를 신고 直立하고 있는 자세이다.

<山西省太原市新董茄村 唐 趙澄之墓壁畵人物圖 : 仝上>

圖 6
이는 侍女가 半臂를 입고, 두 손을 들어 被(領布)를 걸칠려는 자세를 石槨에 새겨진 線畵이다.
<陝西省乾縣 唐永泰公主墓 石槨線刻畫人物>

圖 7
한 女子가 高髻로 땋고, 黃綠 二彩의 被(領布)를 하고 서 있고, 그 뒤에 幞頭를 쓰고, 長袍를 입는 男子가 如意를 어깨에 메고 있다. 幞頭는 軟脚 二帶이다.
<陝西省西安東郊 唐蘇思勗墓 壁畫人物>

<原田 :「唐代의 服飾」에서>

## Ⅲ. 新羅 服次의 唐物과 土產

服飾의 根本은 그 構造에 있다기 보다 그 衣次에 있다. 이 衣次는 그 民族 그 나라의 生產性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實物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言及할 수가 없다.

그래서 中國, 日本의 文獻, 實物을 통한 간접적 方法밖에 없는 것이다. 이 禁制에 援用된 織物을 唐制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唐六典 唐代의 織物은 唐六典 卷22 織染署 條에,

「一日布, 二日絹, 三日絁, 四日紗, 五日綾, 六日羅, 七日錦, 八日綺, 九日繝, 十日褐」

이라고 있다. 興德王 禁制에서 문제된 것은 1에서 7까지 다시 繐, 罽, 繡, 金銀泥, 纐纈 등이다. 繐는 儀禮 喪服 註에 「布細而疏者謂之繐」라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形容詞로 쓴 것 같다. 罽는 毛織物로 爾雅, 釋詁 「氂 罽也」의 註에 「毛氂所以爲罽」의 疏 「罽者織毛爲之若今之毛氈也」로 보면 오늘의 라사 系統의 毛織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前記 織物은 1에서 10까지의 順序가 貴重度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인다. 原田淑人博士는 그의 「唐代의 服飾」에서,

「布는 麻布 葛布와 같은 植物 纖維의 織物을 말하고, 絹은 보통의 平織絹을 말함인가. 또 絹라고 하는 것이 있다. 生絲의 織成이라고 풀이된다. 또 繒이라고 하는 것은 絹帛의 總稱이다. 絁는 日本에서는 「フトギヌ：アシギヌ」라고 訓하여 太織絹을 말한다. 紗는 엷은 透織을 말하고, 그 皺文있는 것을 특히 「縠」이라 부른다. 綾은 綾織으로 羅는 輕鬆의 織物이다. 錦은 각종의 彩絲로써 織成한 가장 巧麗한 것, 綺는 日本에서 「オリモノ」 또는 「カムハタ」라고 訓하여 細幅의 錦織을 일컬은 것 같다. 綢은 大綢錦과 같이 소위 綴織을 말한 것 같다. 褐은 毛織을 가리켰다.」 라고 말하고 있다.(15)

禁制의 繡, 金銀泥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좋겠고, 다시 纐纈은,

「文樣을 도려낸 두장의 엷은 판대기로 絹布를 물리고(夾) 도려낸 部分부터 물들여 그 뒤 이 엷은 판대기를 떼어 文樣을 물들이는 方法이다」.(16)

라고 있는 것과 같이 唐代에 이미 行하여진 방법이다. 蛇足으로 纐纈은 실로 布帛을 졸라매고 이를 물들이는 方法이다.(17)

罽는 다음 「羅」 條에서 羅의 繡用으로 特히 使用되었다. 이 罽가 特히 貴重한 것으로 여겨진 것은 그 使用하는 毛의 種類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것이 奢侈品으로 인정된 데는 비로드나 벨베트와 같은 털이 밖으로 일어서는 毛織物이 아니었던가 한다.

羅에는,

罽繡錦羅、罽繡錦野草羅

罽繡羅　罽羅

繐羅　(가늘고 성긴(疎) 羅)

野草羅　(野草를 織成한 羅)

布紡羅　(布交織羅？)

錦羅　(錦交織羅？)

乘天羅　(乘天女織成羅？)

(15) 原田, 前揭書 p.7.
(16) 原田, 前揭書 p.9.
(17) 仝

越羅 (?)

紗 (上項 說明)

絁 (上項 說明)

綿紬 (지금의 명주?)

紬 (현재의 紬?)

綾 (上項 說明) (이상 괄호 안의 설명은 筆者의 推測)

등이 있다. 이를 「罽, 羅紗」 중에는 中國에서 導入된 外來品이 있었다고 본다.

布는 麻布이다. 이는 木綿이전의 代表的 織物이다. 禁制에,

| | |
|---|---|
| 眞骨大等 | 用二十六升已下 |
| 六頭品 | 用十八升已下 |
| 五頭品 | 用十五升已下 |
| 四頭品 | 用十三升已下 |
| 平 人 | 用十二升已下 |
| 眞骨女 | 用十二升已下 |
| 六頭品女 | 用二十八升已下 |
| 五頭品女 | 用二十五升已下 |
| 四頭品女 | 用十八升已下 |
| 平人女 | 用十二升已下 |

로 되어 있다. 여기의 布가 絹까지 들어갈지 疑問이 든다. 요지음의 경우 木綿은 8, 9升, 麻布는 7, 8升, 明紬는 15升정도가 보통이다. 그러나 木綿이나 麻布도 「보름새」라 하여 15升까지 짤 수 있으므로 明紬의 겨우 여기의 26升이하라는 것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三國史記 文武王 條에,

「絹布舊十尋爲一匹 改以長七步 廣二尺爲匹」(18)

이라 있다.

當時는 魏尺을 使用하던 때이므로 오늘날의 미터尺으로 換算하면 그 幅이 48, 24cm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幅 35cm정도보다 一倍半이다. 그렇게 되면 眞骨大等의 26升이 현재의 18升정도되며, 平人의 12升이 현재의 8, 9升 정도이니 그리 精密한 升數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李朝의 升數 制限보다는 精密한 것 같다. 李朝의 경우, 世宗實錄에,

「丙子傳旨 戶曹前此各殿各殿衣纏苧布用十五十四十三升 自今改用十二升」(19)

라 있고, 다시 成宗年正月을,

(18) 三國史記 卷第6 新羅本紀第 6
(19) 成宗 39年 9月 vol. 113, p. 34B

禁奢侈節目에,

「一進上衣襯用十一升 臣之服宜有差等 自今士族衣服毋過十升」[20]

이라고 있다. 당시의 布幅을 硏究할 겨를이 없었으나 이도 羅代와 別差異가 없는 것 같다.

## Ⅳ. 新羅의 服色 禁制

服色의 禁制는 이미 高句麗, 百濟, 新羅 共히 있어온 것이지만, 이 興德王 禁制는 이를 具體的으로 規制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또 이 色의 禁制는 衣服 뿐만 아니라 屋舍, 車騎,. 器用에도 있어 貴族王國으로서의 階級的 等差를 明示한 것이다.

이 色의 禁制는 女子服飾에만 있으나 이는 男服에도 그대로 適用될 것이다.

眞 骨 女　　九(凡)色 禁赭黃

六頭品女　　禁[赭黃][紫紫粉金屑紅]

五頭品女　　禁[赭黃][紫紫粉黃屑紅]緋

四頭品女　　禁[赭黃]紫紫粉黃屑緋紅

　　　　　　[滅紫]

平 人 女　　「與四頭品女同」

이 禁制를 援用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王　　妃　　赭黃

眞 骨 女　　紫紫紛金屑江

六頭品女　　緋

五頭品女　　滅紫

四頭品女　　?

平 人 女　　?」

여기서 緋까지는 理解가 가나 五頭品 以下가 문제이다.

이보다 올라간 法興王때의 六部人의 服色이,

「自太大角干至大阿飡　紫衣

阿飡至級飡　　緋衣

　　并牙笏

大奈麻　　靑衣

大舍至先沮知　　黃衣」

로 되어 있다. 이 構造와 興德王 禁制는 大同小異하다고 보겠으나 靑, 黃관계가 모호하다.

(20) 成宗 3 年正月 v. 14, p. 12

당시 唐本土에 있어서는 公服은 紫·緋·綠·靑이고 庶民들은 皂色이나 白色 밖에 입을 수 없었다. 아울러 당시 唐帝로부터 新羅王에게 賜與한 冠服은 「紫羅繡袍」와 같이 紫色이었다. 다만 麗代에는 赭黃(緗)系統을 王의 常服으로 입었으므로 王이나 王妃의 服色으로서 無關했으리라 본다. 麗代의 경우도 王은 公服에는 「紫羅公服」에 象笏玉帶를 하였다.

그러므로 公服은 「紫羅公服」을 입으면서 常服으로는 「烏紗高帽에 窄袖緗袍와 紫羅勒巾」을 한 麗代의 것과 對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滅紫」는 퇴색된 紫色을 말하는 것으로 五頭品女가 滅紫, 四頭品女가 黃, 平人女가 白色을 입었다면 法興王代의 그것과 對應이 될 수 있다.

물론, 白色이라고 하지만 麻布나 苧布가 漂白되기 전에는 完全한 白色이 아니므로 얼마간의 色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葛布는 純白에 가깝다.

다만, 현재 濟州道의 갈옷은 麻布나 木綿에다 감물(柿汁)을 드려 土黃色에 가까운 色을 지니고 있다.

한편 三國史記 雜志 職官 武官 條의 각 衿色에 대하여는 朴恩用 教授가 漢字 「徽織」에서 우리말 「깃」이 나온 것이라고 類推하면서 이 衿色에 대한 論文을 발표한 바 있다. 유감이나마 여기에 대하여는 오늘 確證지을 方途가 없다. 다만 職官 九誓幢 條에 보면, 神文王代까지도 存在한 것으로 되어, 여기에,[21]

| | | | | |
|---|---|---|---|---|
| 1 綠衿 | 誓幢 | | 衿色 | 綠紫 |
| 2 紫衿 | ~ | | ~ | 紫綠 |
| 3 白衿 | ~ | (百 濟 民) | ~ | 白靑 |
| 4 紫衿 | ~ | | | |
| 5 黃百 | ~ | (高句麗民) | ~ | 赤黃 |
| 6 黑衿 | ~ | (靺鞨國民) | ~ | 黑赤 |
| 7 碧衿 | ~ | (報德城民) | ~ | 碧黃 |
| 8 赤衿 | ~ | ( 〃 ) | ~ | 赤黑 |
| 9 靑衿 | ~ | (百濟殘民) | ~ | 靑白 |

등 衿色에 紫·緋·綠, 靑·黃·赤·碧·黑·白 등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白色은 平民, 黑色에 가까운 것으로 皂色은 僧侶, 黑色은 皂隸의 服色이다. 그러면 前記 法興王代 服色과의 差異는 靑·黃·碧·赤·綠色이다. 間色인 赭黃을 禁하였으므로 赤·黃을 빼고 靑·碧이 비슷하므로 이를 靑으로 統一하면, 남은 것은 綠·靑色이다. 이렇게 되면 宋史 輿服志에,

「公服凡朝服謂之具服 公服從省今謂之常服 宋因唐制

(21) 三國史記 第40 雜志9 職官下

三品以上 服紫

五品以上 服朱

七品以上 服綠

九品以上 服靑其

其制曲領大袖 下施橫襴以革帶幞頭烏皮韡 自天公至一命之士通服之」[22]

라고 있으므로 唐宋制로서의 紫·朱·綠·靑色과 對應이 되는 紫·緋·綠·靑이 新羅末期의 服色으로 보아진다.

## V. 頭衣 및 頭飾

머리는 頭飾과 冠帽를 나뉜다. 頭飾은 頭髮 및 이에 대한 裝飾이고, 冠帽는 頭衣이다. 男子의 頭髮은, 小人은 結髮, 大人은 상투(髻)型이고, 女子는 얹은 머리와 束髮(高麗圖經)이 되겠다.

男子의 代表的 頭衣는 弁(巾)과 幞頭이겠으나 禁制에는 幞頭만 나와 있다.

幞頭는 禁制에,

「眞骨大等 任意

六頭品 用繐羅絁絹布

五頭品 用 羅絁絹布

四頭品 只用 紗絁絹布

平 人 只用 絹布」

라 있다. 이는 幞頭次에 대한 禁制이고, 그 制度 여하에 대하여는 唐制로 類推할 수 밖에 없다.

幞頭次를 絹으로 한다면 그 안은 宋史輿服志에 있는 바와 같이,

「幞頭一名折上巾 起自後周 然止以軟帛 垂脚 隋始以桐木爲之 唐始以羅代繒 惟當服則脚上曲 人臣下垂 五代漸變平直 國朝之制 君臣通服平脚 乘輿或服上曲焉 其初以藤織草巾子爲裏 紗爲表而塗以漆 後惟以漆爲堅去其藤裏 前爲一折 平施兩脚 以鐵爲之」

에서와 紗布 밑에 무엇을 받쳤을 것이다. 그것을 隋에서는 桐木으로 하였다 하니 가벼운 나무로 뿔을 만들어 紗와 羅를 여기에 입혔다. 唐에서는 羅를 입혔으나, 여기서는 繐羅絁絹布로 그 위를 입힌 것이다.

앞에 引用한 것은 宋制이지만, 唐制를 襲用했을 當時의 幞頭는 紗羅幞頭에 下垂帶였을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高麗圖經에 貴人은 兩帶이고, 民庶는 四帶여서, 民庶는 兩帶幞頭를 보면 도망

(22) 宋史 卷153 輿服志 第106 輿服 5

하고 避한다 하였으니, 麗代에는 이 兩脚이 옆으로 下垂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 羅代에 傳來된 幞頭가 처음에는 「止以軟帛垂脚」과 같이 뒤로 帶를 내렸을 뿐, 옆으로 뻗치는 脚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異次頓供養幢」에 있는 冠帽 型態이다. 이것이 發展하여 高麗圖經에 나오는 바와 같은 冠帽로 되어 李朝까지 傳承되었다.

女子의 頭飾에 대하여는 明確한 記錄이 없다. 다만 梁山 夫婦塚은 4,5世紀로 推定되지만 여기에 樺皮冠이 있어 그 一貌를 推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樺皮冠은 고깔 모양을 하고 있어 일종의 外出服에 입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거니와, 이 冠樣이 바로 頭飾을 支配하고 있으므로, 이 冠樣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頭飾의 全貌를 밝힐 수 없다. 「高麗圖經」에는 女子의 頭飾은 束髮이라고 했다. 즉 髻는 貴賤이 같되 머리를 右肩에 내려뜨리고 남은 머리는 아래로 내리되 絳羅를 묶는다고 하였고, 小簪으로 꽂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韓末까지 있던 소위 「사양머리」라는 것이다.

高句麗 壁畵로부터 「高麗圖經」에 내려오는 동안 이런 模樣을 하였을까 疑心이 간다. 上代에는 머리가 긴 것이 美人의 條件에 들었으니만큼 이를 修飾하는 어떤 頭飾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高麗時代에 와서는 「蒙首」(너울)가 發達하였으므로 일부러 머리를 修飾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른다.

唐代에는 여러 頭飾이 있었던 것으로 女子陶俑을 보아도 各樣各色의 頭飾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文武王二年에 女子服飾을 中國化하는데 頭飾은 그대로 두었을까 여러가지 疑心이 간다.

이 禁制를 援用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王妃 瑟瑟鈿冠

眞骨女

六頭品女 繐羅紗絹冠

五頭品女 [無冠]

四頭品女 [無冠]」

여기서는 六頭品女가 主가 되겠는데, 繐羅紗絹을 쓴다라고만 되어 있으니 이는 梁山 夫婦塚의 冠帽에도 해당되는 材料이나 그 形態는 알 수가 없다. 眞骨女의 경우 「鈿」은 梳 條에도 禁止되어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舊唐書 輿服志에,

「武觀 貞觀(619~649)之時 宮人騎馬者 依齊隨舊制 多著冪䍦 雖發自戎夷而全身障蔽 不欲途路窺之 王公之家亦同此制 永徽之後(650~ ) 皆用帷帽施裙到頸 漸爲淺露……然則天之後 帷帽大行 冪䍦漸息 中宗即位(684) 宮禁寬弛 公私婦人 無復冪䍦之制, 開元初(713~ ) 從駕宮人騎馬者 皆著胡帽 靚粧露面 無復障蔽 士庶之家 又相倣效 帷帽之制 絕不行用 又露面馳騁 或有

著丈夫衣服靴衫而尊卑內外斯一貫矣」

라고 있다. 이로 보면 唐에서도 이 冪䍦와 帷帽制가 交代하면서 變化가 無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景德王代는 唐代로 말하면 露面時代에 해당하다. 그러면 麗代에 蒙首가 크게 流行한 理由는 무엇인가. 또 羅火이 李朝末까지 流行한 理由는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보면 冪䍦니 帷帽니 하는 것도 新羅時代에 貴族사이에 이미 들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新羅時代 騎馬가 流行하였던 바 이런 面에서도 이것이 들어왔을 可能性은 짙다.

이 冪䍦 밑에 竺子를 쓴다. 이 竺子에 「畵金竺子」를 섰다고 하여 李朝初에 많은 禁令이 내려졌다. 그러고 보면 이 畵金竺子를 梁山 夫婦塚이 樺皮冠에 連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具體的인 데이타가 없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推測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樺皮冠은 「고갈」型인데 畵金竺子은 平圓型이다.

梳는 머리빗이다. 이 梳는 禁制에

「眞 骨 女　禁瑟瑟鈿玳瑁
　六頭品女　禁瑟瑟鈿
　五頭品女　用素玳瑁已下
　四頭品女　用素牙角木」

로 되어 있다. 여기나와 있는 材料는 瑟瑟鈿, 玳瑁, 素玳瑁, 素牙角, 木 등이 物名으로 나오게 된다.

梳는 唐制에서는 兩鬢 後頭部 등에 꽂고 그 材料는 木製 외에 犀玉水晶象牙 등이 있다고 하였다.[23] 新羅에서도 이를 後頭部에 꽂았다고 보아야 옳겠으나 이를 確定지울 수가 없다.

이 禁制를 援用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王　　妃　瑟瑟鈿玳瑁梳
　眞 骨 女　?
　六頭品女　?
　五頭品女　素玳瑁梳
　四頭品女　素牙角木梳」

여기 瑟瑟鈿의 鈿이란 金으로써 花型을 만들어 田田然히 머리를 장식하기 때문에 鈿이라 하며[24] 이 制度로 唐制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瑟瑟鈿玳瑁」의 경우, 이를 象箝한 것인지 梳위에 따로 裝飾品을 단 것인지는 分明치 않다. 다만 唐代의 服飾에는 따로 장식품을 단 것도 있

(23) 原田, 前揭書 p.85.
(24) 原田, 前揭書 p.87.

으나 梳의 性質上 앞 것이 아닌가 한다.

釵는 동곶(雙股)이다. 禁制에,

「眞 骨 女 禁刻鏤及綴珠
　六頭品女 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
　五頭品女 用白銀已下
　四頭品女 禁刻鏤綴珠及純金
　平 人 女 用鍮石已下」

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鏤刻, 綴珠 등의 工藝樣式과, 材料로 純金, 白銀, 鍮石 등이 보인다.

이를 援用 再構하면,

「王妃 純金刻鏤釵及綴珠釵
　眞 骨 女 純金을 銀刻한 것 및 綴珠
　六頭品女 純金釵?
　五頭品女 白鍮釵이하
　四頭品女 〃
　平 人 女 鍮石釵이하

로 된다. 요지음 武寧王陵 出土品가운데 이 「釵」가 몇개 있으니 이미 前代부터 그대로 써온 것으로 보인다.

釵는 玉篇에 「婦人岐笄」라 하여 두가닥으로 한 비녀를 말함이나, 이것이 唐制인 듯하며, 唐制에서는 「金釵十二行」이란 詩句에서와 같이 많은 釵를 꽂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材料도 金 銀 珠玉 珊瑚 琥珀 水晶 琉璃 등이 있었고, 그 雕飾에도 鳳 鸞 鴛鴦 燕 雀 鸂鶒 蟬 蝶 魚 등이 있었다 한다.[25]

## Ⅵ. 上 衣

上衣는 上體를 被服하는 옷이다. 國俗의 典型은 短褐, 긴저고리(褶, 襦) 그 위에 입는 두루마기로서의 袍이다. 新羅에서는 이를 尉解(우티·우치)라 하였다. 이것이 中國制를 採用하여 有官者의 二重構造的 上衣가 된 것이 다.

上衣의 代表는 表衣인 것 같다. 表衣는 男子의 경우 袍襴이고, 女子의 경우 袍衣일 것이다.

表衣는 禁制에,

(25) 原田, 前揭書 p.86.

男「眞骨大等　禁罽繡錦羅
　六頭品　只用　綿紬紬布
　五頭品　只用　　　布
　四頭品　只用　　　布
　平　人　只用　　　布」
女「眞骨(大等)女　禁　罽繡錦羅
　六頭品女　只用　小文綾絁絹
　五頭品女　只用　無紋獨織
　四頭品女　只用　綿紬已下」

로 되어 있다. 男子의 경우는 唐制의 袍襴이니 圖版(5)을 參照하면 될 것이다. 다만 女子의 表衣는 高麗圖經 貴婦 條에 「白紵爲袍 略如男子」와 같이 袍衣였을 것이다. 唐制의 女子의 袍衣는 圖版(4)에 있다.

表衣가 中國制의 袍衣라면 內衣는 國制의 袍衣가 되지 않을까 한다.

內衣에 있어서도 文綾絁絹布 등 禁制가 있는 것을 보면 國末에 周衣 위에 禮服을 걸치는 것과 같이 한 服飾構造 안에서의 二重構造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만약 內衣가 唐의 服飾이라면 中單을 말하는 것이 된다.

唐書 車服志의 中單 例는 大裘 條에,

「白紗中單 皂領 靑褾襈裾」

라고 있다. 이는 天子의 服이고 皂(黑)色의 領, 靑色의 褾(소매부리), 아울러 襈裾(裾緣)을 한 것이니 上代의 玄端에서 綿綿히 내려온 深衣制와 같은 것으로 보이나, 이것을 新羅人들이 그대로 着用했는지 與否는 알길이 없다. 또 여기에 쓰이는 衣次가 여러가지 있으므로 단순히 白紗中單만은 아닌 것 같다. 白紗中單은 冕服에 입는 것이므로 新羅에 있어서의 冕服의 存在 與否가 疑心되므로 文字 그대로 內衣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內衣와 袴가 있으나 襦가 없는 것을 보면, 이 內衣는 현재의 「저고리」와 같은 形態는 아니었을 것 같다. 女子의 경우는 五頭品女에 短衣가 있다. 그러나 이 短衣도 現在의 저고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內衣는 禁制에는 男女 共通이다.

(男)「眞骨大等
　六頭品　只用　小文綾絁絹布
　五頭品　只用　小文綾絁絹布
　四頭品　只用　　絁絹綿絹布
　平　人　只用　　　　絹布」

(女)「眞 骨 女 禁 罽繡羅
六頭品女 禁 罽繡錦 野草羅
五頭品女 只用 小文綾
四頭品女 只用 小文綾已下
平 人 女 只用 絁絹綿紬布」

그러나 이 內衣, 表衣를 물론하고 여기서는 便宜上 男女를 같이 다루나 그 制度는 別個로 보아야 할 것이다.

全體的인 構造는 羅制服制의 基本構造에서 前言하였으므로 아래에서 같이 다루겠다.

다시 短衣는 禁制에,

「眞骨(大等)女
六頭品女 禁罽繡錦羅 布紡羅 野草羅 金銀泥
五頭品女 禁罽繡錦 野草羅 布紡羅 總羅 金銀泥 纐纈
四頭品女 只用 絹已下
平 人 女

라고 있다. 이 六頭骨女의 禁制를 眞骨女에 轉換시키면 이는 相當히 華麗한 衣服이 된다.

中國制 短衣는 說文에 「襦 短衣也 一曰羼溫」이라고 있고, 顔師古의 急就篇注에 「短而施要曰襦」라고 하여 襦가 短衣이며 褻衣이었던 것이나, 이 興德王 禁制의 短衣가 四頭品女→六頭品女에 나타나고 平人女쪽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것이 唐制일 可能性이 많다. 圖版(1)에서 치마의 허리 속에 가려있는 上衣가 短衣인가? 잠간 疑問을 남겨 준다.

褙襠은 中國制로서 禁制에,

「眞 骨 女
六頭品女 禁罽繡錦羅 布紡羅 野草羅 金銀泥
五頭品女 禁罽繡錦 野草羅 布紡羅 金銀泥 纐纈
四頭品女 只用綾已下」

라 있다. 이는 또 女子의 服飾에만 나온다. 그러나 褙襠이 裲襠과 같은 것이라면 日本 女官의 服飾에 나오는 「背子」가 그것이다.

唐書 車服志에,

「裲襠之制 一當胸 一當背 短袖覆膊」

라고 있어 앞 뒤를 가리고 위팔목을 가리는 웃옷이다. 그러나 唐에서는 이는 武官의 옷으로 되어 있다. 半臂와 비슷한 것이다.

天寶三載 唐豆盧建墓 出土 武官俑[26]의 服飾에서 볼 수 있는 裲襠은 그 典型的인 것으로, 이

(26) 原田, 前揭書, p.27.

武 官
<唐代의 服飾에서>

것이 이 禁制의 褙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武官俑은 長袖의 褶의 上衣를 입고 아래에 大口袴를 입고, 무릎(膝)에서 이를 묶고, 革帶에 烏皮靴(?)를 신고 있다. 이는 玄宗朝에 있어서의 武官의 朝服으로 보인다고 하고 武官俑의 頭衣로 武弁의 弁의 後頭部에 해당하는 立飾은 平巾幘이 아닌가 라고 論證하고 있다.

褾는 中國制로 領布이다. 禁制에,

「眞骨女 禁罽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六頭品女 禁 罽繡羅 金銀泥
五頭品女 用 綾絹已下
四頭品女 只用 絹已下」

라고 있다. 이 領布는 圖版(1)(6)(7)의 女子服飾에 나오는 어깨에 걸치는 현재의 쇼오르와 같은 것이다.

褾는 眞骨女에서 四頭品女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眞骨女는 「禁罽及繡用金銀糸孔雀尾 翡翠毛者」라 하였으니 이 禁制의 制限을 받지 않은 王妃의 褾의 美麗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眞骨女의 褾에는 다음 六頭品女의 禁制인 「罽繡錦羅金銀泥가 許用된 것으로 보이며, 六頭品女의 褾에는 다음 五頭品女의 禁制인 綾絹已上 즉 罽 (繡를 놓지 않은) 羅 등속이 許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五頭品女는 綾絹以下, 四頭品女는 絹以下로 되어 있다.

이 褾는 事物紀原 衣裘帶服部 帔子 條에,

「秦有帔帛以縑布爲之 漢即以羅 晋永嘉中 制絳暈帔子 開元中令三妃以下通服之 是披帛始於秦 帔始於晋 今代帔有二等 霞帔非恩賜不得服 爲婦人之命服 而直帔通用於民間也 唐制士庶女子在室搭披帛 出適搭披子 以別出處之義 今仕族亦有循用者」

라 있는 披帛·帔子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 霞披는 李朝初에 王妃命服과 더불어 들어와 國末까지 傳承되었으나, 애초의 褾와는 달라졌다고 보는 바이다. 그러나 어깨에 걸쳐 내려오는 이 종류의 것은 處容冠服 天衣에도 있고 女子禮服에는 現在에도 殘存하고 있다.

半臂는 中國制이고 禁制에 男女 共通으로,

「眞骨大等 禁 罽繡錦羅
六 頭 品

五 頭 品 只用 小文綾絁絹布
四 頭 品 只用 綾絹綿紬布」

「眞 骨 女 禁 罽繡羅
六頭品女 禁 罽繡羅 繐羅
五頭品女 禁 罽繡錦 野草羅 繐羅
四頭品女 只用 小文綾絁絹已下」

등으로 나와 있다.

이 半臂는 男女共用이나 이 表에서 보면 王과 王妃는 半臂에 罽繡錦羅를 하고, 眞骨女는 繐羅半臂를 입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六頭品 男子에 대한 規定은 없다. 여기서 女子는 男子보다 一等 더 華麗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면 女子 五頭品의 禁制를 適用하면 될 것이다. 半臂는 背子라고 하여 朝服을 입을 때 男女 다 같이 衫위에 걸치는 半臂程度의 동거이型의 服飾이다.

事物紀元 衣裘帶服部 背子 條에,

「隋大業中 內官多服半臂 除却長袖也 唐高祖減其袖 謂之半臂 今背子也」

라 있다. 現在 남아 있는 俑 가운데는 左衽의 것도 있다 하므로 이것이 兩裾交衽型이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唐衣」가 半臂에서 나왔을 가능은 크나 唐衣는 全袖인데 差異를 지니고 있다.

李朝 肅·英代 宋文欽(1710~1752)의 閑靜堂集에,

「其所謂長背子 引爲長袖兩裾相掩 兩腋不縫者 與今丈夫長襦略同 稍短之則當爲短背子 即今之唐衣也 其半臂者 與今之掛子略同 但掛子 兩裾直垂爲異 其半臂而短者 即今之背子也」

라 하였다.

즉 半臂라는 것은 掛子와 비슷한데 兩裾直垂가 아니고 兩裾相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起源的으로 보면 背子와 半臂는 같은 것이다. 소매의 有無長短에 따라 다른 것이니 閑靜堂集의 說明이 事物紀原 보다는 簡要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 그 沿襲關係도 밝히 알 수 있다. 즉 長背子는 女子의 衣服이지만, 男子의 道袍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說明은 「家禮」에 나오는 것을 前提로 하고 한 말이지만, 國俗과는 달라진지 오래다. 다만 李朝에 女子의 衣服(特히 喪服에서)을 華服으로 고치려는 意圖下에 이런 長背子같은 名稱을 들여왔으나 國俗으로는 長衫이 될 것이다. 여기서 短背子로서의 唐衣가 나오는데 半臂는 掛子와 같되, 짧은 것이 다르다. 그리고 당시의 背子는 「半臂而短者」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褙子와 近接해온 型態라 보여진다.

이렇게 하나의 衣服이 우리 國俗에서도 달라지고, 그 源流인 中國에서도 달라져나간 徑路가 각기 다르므로 名稱만으로는 그 異同을 밝히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國俗의 唐衣는 新羅時代에서 바로 接受되었다기보다, 羅代의 半臂는 없어지고, 朝鮮初에 「家禮」로 다시 移入된 것이

宮中에서 變易된 것이라고 보아두는 것이 좋겠다.

半臂를 입은 女人
<「唐代의 服飾」에서>

## VII. 帶

帶는 腰衣라고나 할까. 허리에서 袍·襦를 緊縛하는 것이다. 原型은 가죽(皮革)이겠으나, 샤만의 帶는 여러 銙帶와 下垂가 달려 있다. 金冠塚 其他의 銙帶가 바로 그것이나 이것이 中國制로 變異되는 것이다.

禁制에 腰帶는 男子의 경우,

「眞骨大等　禁硏文白玉
六 頭 品　只用　烏犀鍮鐵銅
五 頭 品　只用　鐵
四 頭 品　只用　鐵銅
平　　人　只用　銅鐵」

로 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材料는 硏文白玉, 烏犀, 鍮鐵銅, 鐵, 鐵銅, 銅鐵등 서로 混同하기 쉬운 이름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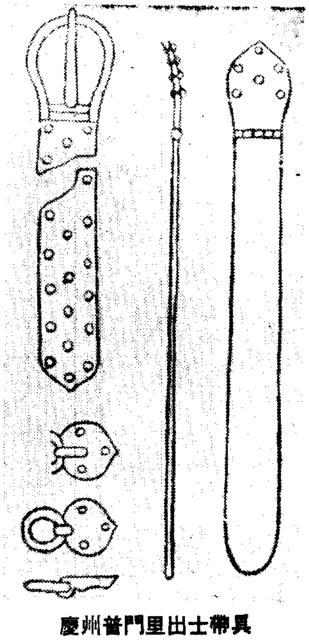

慶州普門里出土帶具

이 腰帶에 對應되는 女子의 것이 褾襻이다. 女子는 帶가 있고, 褾가 있고, 襻이 있어 그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男子服의 帶를 再構하면,

「王　硏文白玉帶
眞等大等　金銀帶?
六頭品
五頭品　} 前　同
四頭品
平　人

이 된다. 이 硏文白玉은 唐에서 王에게 賜與한 官階에 相當한 腰帶次인 것 같다.

唐에 있어서도 服色 改正이 빈번하였지만, 唐과의 時代的差를 考慮해서 興德王 禁制보다 80年前의 上元元年(A.D.760)制를

보면 文武官三品以上은 紫·金王帶13銙, 4品은 深緋, 金帶十一銙, 五品은 淺緋, 金帶十銙, 6品은 深綠 銀帶9銙, 8品은 深青, 鍮石帶, 庶人은 黃銅鐵帶 7銙를 服하고 있다.(27)

그러므로 眞骨大等에 金銀帶를 許用했어야 構造上 相應된다.

唐의 構造가 金玉帶·金帶·銀帶·鍮石帶 銅鐵帶로 되었으며, 慶州 普門里에서 銀帶, 9銙環이 나왔으므로 이 銙帶가 新羅 下代에도 使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女子服의 帶 褾襻은 禁制에,

「眞 骨 女

六頭品女 (褾襻)禁罽繡

五頭品女 (褾襻)禁罽繡錦羅

衣　　裳 (帶) 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四頭品女 (褾) 與越同

(褾) 用越羅

平 人 女 (褾) 只用已下」

라고 되어 있으나 그 자세한 것을 알길이 없으나 帶에는 組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裾위에 장식하는 襈있는 帶이고, 褾는 表裳의 끈, 襻은 알 수가 없다.

이 帶에는 각기 夫의 等級에 따라 紫, 緋, 綿…으로 그 빛갈이 달라진다.(日本의 경우) 新羅의 경우도 같은 것으로 본다.

## VIII. 裳 · 袴

下衣는 아래를 被服하는 옷이며 男子의 袴衣는 說文에 「脛衣」로 되어 있다. 國俗은 袴(고이)가 원형이고, 男子의 裳은 中國制, 女子의 裳裙은 이미 西紀 3, 4世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國制가 된지 오래다.

裳은 裙이라고 하여 元來 東胡服 系統에는 없던 것이다.

高句麗壁畵에도 細褶裳이 보이니 일직부터 傳來된 것을 알 수 있다. 新羅의 裳은 表裳과 內裳이 있는데 內裳도 單純한 속치마가 아니고, 儀禮的인 用途에도 所用되었던 것으로 五頭品女까지만 內裳을 입고 있다.

表裳은 禁制에,

「眞 骨 女

六頭品女 禁罽繡錦羅 總羅 野草羅 金銀泥 纐纈

(27) 唐會要 卷31 章服品第 條

五頭品女 禁罽繡錦羅 野草羅 繐羅 金銀泥 纐纈

四頭品女 只用 絁絹已下

平人女 用 絹已下」

라고 있고,

內裳은 禁制에,

「眞骨女

六頭品女 禁罽繡錦羅 野草羅

五頭品女 禁罽繡錦野草羅 金銀泥 纐纈

四頭品女 (無內裳)」

라고 있다.

이 表裳이나 內裳이나 眞骨女 條에 보이지 않음은 眞骨女에는 이런 禁制가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相當히 화려한 것이다.

또 이 裳들에 細褶이 있었음은 唐代에도 女子의 裳들이 細褶이 있었음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高麗圖經에 와서 製裙에 匹數가 많이 들었다는 것으로써 짐작된다. 또 이 裳이 땅에 끄을 정도로 길었을 것으로 推測되고 金春秋의 男子裳도 밟아 襟襻이 떨어질 程度이었으니 女子의 裳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袴는 바지이고, 男女 共通이다. 禁制에,

(男)「眞骨大等 禁 罽繡錦羅

六頭品 只用 絁絹綿紬布

五頭品 只用 綿紬布

四頭品 只用 布

平人 只用 布」

(女)「眞骨女 禁 罽繡羅

六頭品女 帶 罽繡錦羅 絁羅 金泥

五頭品女 禁 罽繡錦羅 繐羅 金泥 野草羅

四頭品女 只用 小父綾絁絹已下

平人女 用 絁 已下」

로 나온다.

이 袴는 「바지」이지만, 三國時代일로 「柯半」이라 하였던 것을 魏志 東夷傳에서 볼 수 있다. 男子는 이것이 下體被服의 基本服飾으로 되어 있지만 女子의 경우는 이 袴에서 基本 服飾이 裳으로 옮겨진 時代로 보고져 한다. 그러나 아직 女子의 衣次에 平人女가 「絁」이하로 되어 있고 이것이 眞骨女에 있어서는 金泥같은 것을 올린 것을 보면 집에서 있을 때는 이 바지만 입을 수

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女子의 바지는 用便에 便利하게 股間을 터서 겹쳐지게 마름재되어 있다.

上代에는 男子 바지(袴)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處容冠服에도 裙은 고이와 같이 뒤가 터있고 「高宗皇帝의 봉지(바지)는 소피보기 좋게 앞을 터놓았었다」라고 證言한 三祝堂 金氏의 말에서도 看取될 수 있다. 宮中에는 古代樣式이 남아 있기 마련이므로 上古에는 男女가 다 아래를 터놓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더구나 바지에 「대님」을 따로 치지 않고, 바지 부리에 끈이 달리어 그대로 매게 되었을 것이라는 李如星의 推測은 타당성이 있는 일이다.

## Ⅸ. 足　　衣(靴·履·襪)

足衣는 발을 被服하는 靴·鞋·履·襪 등이다. 이 原型은 東胡系統의 皮靴이고, 이것이 南方農耕社會로 내려와서 草履, 麻履 등이 된다.

이 禁制에 나타난 바의 足衣로서의 靴, 履는 男女 二重構造로 되어 있다. 男子는 靴, 女子는 履이다. 그러나 男子도 公廳에서는 靴(六合靴)가 되겠지만 宴居에는 역시 履가 될 것으로 본다. 日本에 있어서나 高句麗 壁畵에 있어서나 男子도 履를 신고 있다.

履는 禁制에,

「眞 骨 女　禁罽繡羅
六頭品女　禁罽繡錦羅 繐羅
五頭品女　但用皮已下
四頭品女　用皮已下
平 人 女」

로 되어 있다.

이를 再構하면,

「王 妃　　罽繡羅履
眞 骨 女　罽羅履
六頭品女　?
五頭品女　皮履
四頭品女　皮履
平 人 女　(麻履?)」

등으로 될 것 같다.

이 履도 唐制를 그대로 使用했으면서도, 이미 出土品으로 나와 있는 銅履의 型態나 高句麗 壁

書의 履가 있었으므로 어느 程度 習合된 型態인지도 알 수 없다.

日本 正倉院에 나와 있는 傳聖武天皇 禮履의 規模를 原田淑人의 著書에서 引用하면,[28]

「衲(누비) 禮履……淺履로서 발끝은 後世의 高鼻履와 같이 말아라올가고 끝은 둘로 쪼개져 蹠(발바닥)은 弧狀으로 부풀어 나와 있다. 겉은 緋의 부드러운 가죽, 아래는 흰가죽, 겉과 아래를 땀떠서 만들어 그 땀뜬 자리에 따라 純金線을 겹뜨고, 또 발끝아래에는 扇形의 胡粉을 발른 흰가죽을 발라 金線으로 갓를 하고 있다. 겉의 꽃모양 珠玉飾에는 銀 반침 쇠붙이의 가운데에 眞珠를 박고, 周圍에 藍·綠·黃·白·褐등의 瑠璃玉을 장식하고 있다.」

라고 있고, 다시 「說略」의 唐의 文德皇后의 遺履에 관한 記錄,

「唐文德皇后遺履 爲米元章寫圖 左方有小跋 是元章爲書學博士時筆跋云 右文德皇后遺履 以丹羽織成 前後金華裁雲爲飾 長尺底向上三寸許 中有兩繫 首綴二珠 蓋古之岐頭履也 臣米芾圖並書」[29]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興德王 禁制의 王妃履로 推想되는 罽繡羅, 罽繡錦羅, 總羅를 配한 華麗한 履制와 相副한다. 여기서 五頭品女以下의 「皮履」는 前記 正倉院의 履와 같이 履本來의 皮革履의 資料에 加飾을 하지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고무신이 앞코가 올라간 것도 이 制度의 遺制로 보이며, 雲鞋, 繡鞋 등의 兩班婦女의 履制가 바로 新羅時代이래의 傳統에 立脚된 것이며, 五頭品以下의 「用皮已下」란 規制도 女子의 갓신의 傳統으로서 充分한 것이다.

靴는 이 禁制에,

| | |
|---|---|
| 「眞骨大等 | 禁紫皮 |
| 六頭品 | 禁烏麖皺文紫皮 |
| 五頭品 | 禁烏麖皺文紫皮 |
| 四頭品 | 〃 |
| 平 人 | 〃 |

로 되어 있다.

이를 援用 再構하면,

| | |
|---|---|
| 「王 | 紫皮靴 |
| 眞骨大等 | 烏麖皺文紫皮 |
| 五 頭 品 | ? |
| 四 頭 品 | ? |
| 平 人 | ?(皮靴)」 |

로 된다.

(28) 原田, 前揭書, pp.43~46
(29) 原田, 前揭書, p.1.

이 境遇 材料面에서도 이 紫皮는 鹿皮가 될 것이다. 五頭品以下는 牛馬皮가 되겠으나 相考할 길은 없다.

形態面에서 이를 唐의 靴와 比較하면, 唐代의 靴에 대하여는 後唐 馬縞의 中華古今注 卷上에,

「鞾者 蓋西胡服也 昔趙武靈王好胡服常服也 其制短靿黃皮 閑居之服 至馬周改制長靿以殺之加之以氈及條 得著入殿省敷奏 取便乘騎也 文武百僚咸服之 至貞觀三年 安西國進緋韋短靿鞾 詔內侍省 分給諸司」[30]

라 있어 原來 北方民族의 것으로 中國에서 이를 襲用하기에 이른 것이다. 北方民族이라면 蒙古族系統으로 推定된다. 高句麗의 靴制에 대하여는 高句麗壁畵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高句麗의 것도 無靿도 있고, 長靿도 있으나 長靿라고 하더라도 복숭아 뼈를 조금 넘을 정도이다. 이것도 唐制의 長靿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靴가 唐制라면 所謂 六合鞾라는 것으로 가죽 여섯 조각으로 만든 靴이다. 濟州道에서 遊牧民들이 신던 靴는 버선型으로 이를 「가죽버선」이라고 하여 세 조각으로 만들었으니 말하자면 三合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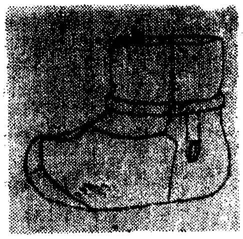

六 合

襪은 禁制에 男子의 경우,

「眞骨大等 襪任用綾已下
六頭品 只用絁綿紬布
五頭品 只用 綿紬
四頭品
平 人」

으로 되어 있고, 女子는,

「眞 骨 女 禁罽繡羅
六頭品女 禁罽繡錦羅 繐羅 野草羅
五頭品女 仝上
四頭品女 只用小文綾絁綿紬布
平 人 女 用絁綿紬已下」

로 되어 있다. 여기에 나와있는 材料로 보아서 襪이 廣木같은 목자로만 하는 것과는 달리 羅代에는 華麗한 襪을 신었을 可能性이 있고, 唐詩에 「羅襪」이 많이 나옴은 唐代에도 그랬던 것 같다.

濟州島의 가죽옷과 신
〈이는 蒙古系統이다〉

다시 襪袎는 보선목으로 禁制에,

(30) 原田, 前揭書 p.28.

「眞 骨 女

六頭品女　禁罽繡錦羅 總羅

五頭品女　禁罽繡錦羅 總羅

四頭品女　只用小文綾已下

平 人 女　用無文」

하고 있다.

이 禁制를 援用 再構하면,

「王　　妃

眞 骨 女　罽繡錦羅襪袎

六頭品女　罽繡錦羅？

五頭品女　？

四頭品女　只用小文綾已下

平 人 女　用無文襪袎」

이 된다. 이렇게 上代에는 보선목에 華麗한 천(衣)을 使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原田淑人의 「唐代의 服飾」에도,

「韈は我邦シタクツと訓し萬葉集には襪沓と記るせり. 正倉院白韈を藏せり. 絹製にして帶子ありといふ. 唐朝のクツを推想し得べし.」[31]

라고 있다. 현재 우리가 신고 있는 「보선」이 바로 中國이나 日本에서 上代에 신었던 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男子나 女子의 襪에는 帶子가 없으나 世宗實錄 志에 나오는 王의 服飾으로서의 韈에 綦(帶子)가 있는 것을 보면 「대님」을 치는 데서 帶子가 없어진 것을 推想할 수 있다. 우리도 幼兒의 韈에는 지금도 帶子가 있다.

宋史 輿服志에 天子의 襪을 說明하는 대목에,

「羅衣繒裏施紡著綦以繫之」

라고 있다. 이를 現代的 表現으로 고치면 「羅를 거죽으로 繒을 안으로 하여 襪(보선목)를 두어 綦(끈)을 붙여 잡아 맨다」[32]로 된다.

또 中國에서도 一般으로는 宋代에 襪에 帶子가 없어진 것이라 한다.

## X. 禁制以後의 服飾構造의 變遷

우리 文獻에서 이 禁制 이후는 徐兢의 「高麗圖經」및 鮮初의 高麗史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

(31) 原田, 前揭書, p.16.
(32) 原田, 前揭書, p.101.

하여는 따로 論文을 執筆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간단하게 言及하려 한다.

이 興德王 服飾 禁制에는 武官服, 甲冑, 僧服 및 一般庶民의 服飾에 대하여는 言及이 없다. 이는 奢侈性 禁壓이 主目的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筆者로서도 이에 대하여 言及할 겨를도 없고, 더구나 그 資料자체도 殆無의 狀態이다. 高句麗 服飾과 新羅本土 出土品 등을 連結하는 方法도 있겠으나 그것도 推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다음 機會에 미루기로 한다.

高麗는 光宗代에 中國 後周의 服制를 採用하였으나 그 根本的 構造는 이 興德王代 構造와 別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바이다.

金富軾은 그의 三國史記에서,

「我太祖受命 凡國家法度 多因羅舊 則至今朝廷士女之衣裳 蓋亦春秋請來之遺制歟 臣三奉使上國 一行衣冠 與宋人無異 嘗入朝 尙早立紫宸殿門 一閤門員來問 何者是高麗人使 曰我是 則笑而去……」[33]

라고 기록하고 있다.

金富軾은 文宗 29年(1075)에 나서 毅宗 5年(1151)에 죽었다. 그런데 高麗圖經(仁宗元年 1123)에 「一遵我宋之制度焉」이라고 적혀 있다. 이 때까지 光宗 7年(956)의 「今百官衣冠從華制」이래 仝 11年의 4色(紫·丹·緋·綠)의 公服 制度며, 間接으로는 契丹에서, 直接으로는 文宗 32年 6月에 宋 神宗으로부터 王의 衣服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富軾이 使臣으로 갈 때는 宋의 服飾과 別差異가 없을 것은 물론이다. 그럼으로써 宋의 官員이 高麗使臣을 보고 웃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宋에서는 唐의 制度를 대부분 襲用하였으므로 新羅의 制度와 같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新羅의 制度가 高宗時代 蒙古가 쳐들어오기 前까지 一般化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李奎報 詩에,

「竭來偶訪先生家 剝剝扣戶烏巾斜……
握手論心淚洒袍……」

<李相國集 v.3 留醉閔判官光孝家主人乞詩走筆贈之>

「篋有蠅頭字 竿懸犢鼻褌……半脫烏紗帽……」

<同上 v.5 古律詩>

「一家來寄碧山傍
矮帽輕衫臥一床

<同上 v.9 律詩 寓居天龍山有作>

「頭岸鹿胎幘 身遮犢鼻褌……」

<同上 退公無事>

「葛巾慵不整……」

(33) 三國史誌, 卷第33 雜志第2

<同上 v. 15次韻皇甫書紀>

「紵衫流汗慵閑坐……」

< 〃 七月 二十五日善法寺>

「孤舟樹席歸遙浦 恰似人頭戴帽行……」

<同上 v. 17 曉登旅舍樓>

등이 있어, 그 制度가 新羅의 制度와 멀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烏巾, 袍, 蝿頭字, 犢鼻褌, 矮帽, 鹿胎幘, 葛巾, 紵衫 등의 有在로 보아 머리는 같은 것(同物異名)이 있다 하더라도 그 制度가 단순히 幞頭一色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들 중 犢鼻褌은 高句麗 壁畵에 있고, 蝿頭字는 「파리머리」로서 李朝末까지 胥吏의 巾이었다.

아울러 筆者가 「高麗圖經의 風俗史的 硏究」에서 밝혀 본 바, 蒙古 侵略이전까지도 우리의 저고리, 袍에 띠가 있었다는 論證은 國俗에 관한 것이나, 오늘날에도 道袍에 술띠가 있고, 애기옷에 띠가 있는 것도 變異는 하였을망정 上古의 遺風으로 보는 바이다.

이 新羅 服制의 남아 있는 것으로 處容 冠服이 있다. 三國史記에,

「哀莊王 八年(807)奏樂 始奏 思內琴

舞尺 四人 靑衣

琴尺 一人 赤衣

歌尺 一人 衫衣 繡扇並金縷帶……」(34)

라 있어 樂士들이 靑·赤·衫衣를 입고 金縷帶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興味를 이끌게 하는 것이 樂學軌範 所載 및 現存 處容舞 冠服이다. 이를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1. 處容假面은 揷花幞頭로서 高麗이래의 樂士의 舊制이다.
2. 衣는 窄袖 彩花團領으로 前裾가 後裾보다 짧다. 衣裾下端이 一尺程度 갈라졌다. 缺骻袍의 殘滓이다.
3. 衣는 黃色, 團領은 紅色, 袖口는 밖으로부터 藍色, 紅色의 色同이다. 앞領에 紅色 바탕에 綠色襈의 딴천이 붙어 있다.
4. 上衣에는 옷고름이 달려 있고, 窄袖, 袖口에 三尺餘의 汗衫이 달려 있다. 高句麗 壁畵의 그림과 같다.
5. 吉慶은 新羅 女服의 띠와 같고 高麗의 勒巾과 같다.
6. 袴(裙)은 現女子의 고장이와 같고, 무릎에 彩花 四角 蔽膝이 붙어 있다. 羅代의 男裙과 같다.
7. 裳은 黃·綠·紅의 條幅으로 되어 있다. 앞만 가린다.

(34) 三國史記 卷第33 雜志第23

8. 帶는 花樣 角帶이다.
9. 天衣는 女服의 霞帔와 같이 華麗하다.
10. 繡鞋에 纓가 달려 있다.

이상으로 보아 이는 相當히 古色을 띠고 있어 高麗初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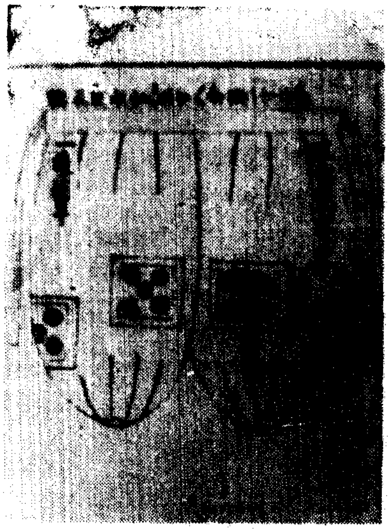

處 容 冠 服
<樂學軌範에서>

이것이 李初의 服色은 아니고, 그 이전의 古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하며, 여기에 어쩌면 新羅의 古樣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이 新羅의 衿色에 관한 論證이다 朴恩用敎授는 그의 논문「新羅軍制가 現代服制에 미친 影響」[35]에서 우리의 오늘날의 깃이 中國의「徽織」에서 나오고,「동정」이 또한 新羅 武官의 衿色에서 나왔다는 說을 전개하였다.

相當히 興味로운 推定이나 이를 그대로 是認하기는 難點이 있다.

우리 高句麗의「襈」(선)이 本來的인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이와 類似한 것으로는 中國古代의「玄端」이 바로 검은色의 襈을 加하고 있으니 그 先後關係를 따지기 어렵다. 이는,

「衿……鳥章鳥集之文章 將師以下衣皆着焉」[36]

이라고 있고, 그 形象은,

「共形半月闕亦着於衣上其長短之制未詳」

이라 하였으나, 이 衿色을 어디에 달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애초의 國俗 衣服이라면 이 衿을 襈위에 달아 表示를 할 수 있을 것이나 中國 袍制인 경우, 이것을 달려면「著於衣上」이라 하였으니 어떻게 달았는지 未審이다. 다만 그 語源 문제에 있어 襟은「訓蒙字會」에서 옷깃금, 기슭금, 衽기슭임, 領 옷깃령, 領옷깃극 등이니「기슭」의 뜻이다. 이렇게 깃이 기슭에서 나왔다 하면 더욱 混迷되지 않을까.

「說文解字注」를 보아도 이런 衿一徽織의 等式은 나오지 아니한다. 잠간 疑問을 挿해 둔다.

金富軾은 우리나라 倡女의 衣裳을 기록하여,

「宗使臣 劉逵吳拭來聘在館 宴次見鄕粧娼女 召來上階 指闊袖衣 色絲帶大裙 嘆曰此皆三代之服 不擬尙行 於此知今之婦人禮服 蓋亦唐之舊歟……」[37]

(35) 國文學硏究, 第二輯, 曉星女子大學國語國文學硏究室, 1669, 12
(36) 三國史記 卷第40 雜志第9
(37) 三國史記 第33 雜志第2 色服

라 報告하고 있다. 娼女의 衣服은 어느 社會에서도 그 服色을 빼어 놓고는 中流의 衣服을 입는다. 그것은 廣大가 緋袍를 입고 王廷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詩를 읊은 李奎報의 경우만도 아닐 것이다. 巫女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巫女의 12거리에서 입는 衣服도 그렇다. 이렇게보면 使臣宴에서 입은 娼女服은 麗代의 婚禮服이었음이 證明된다. 禮服이면 平服과의 二重構造 속에서 당시 高麗의 外命婦의 옷으로서 宋制服色이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또 이것이 闊袖衣, 色絲帶 大裙도 唐代의 服色이 된은 이 論文에 소개된 圖服으로도 證明된다. 中國에서 宋은 唐制를 대부분 그대로 襲用하고 있었으며, 唐의 折上巾인 翼善冠을 그 帶만 달리하여 紗帽로서 李朝末까지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婦女子들 옷만은 많이 變異한 것 같다. 그것은 途中에 蒙古의 公主가 우리 王氏高麗 宮室에 嫁娶해 왔던 까닭이다. 그래서 李朝太宗朝에 女子服色을 中國制로 바꾸자는 意見도 나왔으나 그 宮中 一部가 宋制를 딴 明制로 고쳐졌을 뿐 大部의 女服은 國制 蒙古制 唐宋制가 혼용해서 獨特한 韓服 構造를 形成하였다.

그러므로 저고리는 蒙古制의 저거더치 치마는 高句麗制 그대로, 고장이는 國制의 袴가 中國制 裳(男子의 裳)裙이 習合된 것, 圓衫, 長衫 등은 明制, 襪은 中國制, 履도 中國制가 習用되었다.

이 禁制에 援用된 華麗한 服飾構造 중 어느 만큼이 國產으로 充當되었는지 疑心이 가나 三國史記 雜志에 列擧된 官署에 이의 生產을 管掌하는 宮, 房, 典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當時에도 中國의 蜀錦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國內 所用을 채우고, 唐에 貢物을 바칠 程度로 織造手工業이 官營으로 發達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 各 宮·房·典을 列擧하고 그 所管事를 推測되는대로 記入해 보려 한다.(38)

「朝霞房 母二十三人(朝霞紬生產房)

染 宮 (染色을 말음?)

疏 典 (染本의 彫刻이나 繪畫를 말음?)

紅 典 (잇(紅色)을 말음?)

蘇芳典 (紫色을 말음?)

攢染典 (捺染을 말음)

漂 典 (布를 浣沙한 곳?)

錦典 景德王改爲織錦房 後復故

鐵鍮典

毛典 聚毳房

皮典

鞦典

(38) 三國史記 第39 雜志8

皮打典
靴典
麻履典
麻典 景德王十八年改爲織紡房 後復故 干一人 史八人 從舍知 四人
曝典 屬縣三
綺典
別綿房」

이상 服飾, 器用관계만 추려본 것이지만, 이것을 보더라도 冠服 所用 制作의 官寺가 整備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의 자세한 所管事를 알 수 없음이 유감이다.

朝霞房에서 生產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朝霞紬는 新羅에서 唐에 入貢하는 物品 중의 중요한 것이었다.

染色 技術도 相當하여 纐纈染色같은 技術도 發達한 것으로 보이며, 新羅 것은 아니나 日本 正倉院에도 이 實物이 남아 있다.

또 皮革을 마련하는 官署가 있는 것이 눈에 띄인다.

## XI. 現存 民俗과 興德王 服飾 禁制

이 禁制 頒布 당시의 服飾構造가 唐制服飾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미 國俗服飾과의 二重構造가 存在했을 것으로 본다. 그 理由는 平人男女라 할지라도 그 服飾이 國俗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高麗圖經」에 있어서의 服飾構造, 王服의 경우 燕居에 「民庶無別」의 白苧袍, 勒巾, 衣, 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興德王代도 公廳에 서지 않는 限 王으로부터 平民에 이르기까지 「白苧袍, 勒巾, 長襦, 袴, 襪, 履」의 構造에 相應하는 服飾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服飾에 대한 保守的인 傾向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 버선」의 傳統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韓國服飾의 全期를 부감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 우리의 服飾史 叙述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를 제시해 줄 것이다. 대개의 경우, 韓國服飾을 云云할 때에 上層階級의 服飾을 叙述하기에 급급하지만, 적어도 全體國民의 10分之 9에 해당되는 一般人民의 服飾은 太古이래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이 高句麗 服飾과 현대 服飾, 나아가서 濟州島 服飾마저도 一貫性 있게 系統지을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文化交流가 심했던 日本에 있어서도 그 일반적 構造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일본의 男女 羽織(ハ

オり) 袴(ハカマ)도 궁극에 가서는 高句麗 服飾—東北胡族 服飾에 歸一된다. 다만 濕氣가 많은 日本에서 그 形態가 變하여 寬闊하게 되었을 뿐이다.

현재의 濟州島는 上古의 「州胡」이고, 그들의 服飾속에는 「文身」과 같은 南方系統의 習俗이 있기는 하였으나, 오늘날 남아있는 濟州島 服飾은 高句麗系의 基本服飾에 蒙古系의 寒帶服飾이 牧者服飾으로 殘存하고 習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위 「갈옷」(褐衣)이라는 濟州島 基本服飾은 高句麗系이고, 가죽모자, 가죽두루마기, 가죽바지, 가죽버선 등은 바로 蒙古族이 濟州島에 牧場을 經營한 뒤부터 아직 原形대로 남아 있던 蒙古服飾이 習合되게 된 것이다. 이 習合도 그 原型(prototype)이 서로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皮革服飾은 肅愼의 故地인 咸鏡道에 洪良浩가 耳溪集에서 읊은대로 國末까지 存在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狩獵社會나 遊牧社會에서 農耕社會로 移行한 뒤에도 그 原型은 그대로 沿襲하고 있으면서 그 衣次만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興德王 服飾 禁制라는 것도 단순히 表層階級의 衣服構造 특히 그 奢侈性構造에 대한 部分的 言及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奢侈性 構造이기 때문에, 오늘날 服飾에 있어서도 그것이 奢侈性인 것만은 같을 것이다. 그래서 李朝末에 이르기까지 「經國大典」의 禁制, 「紋緞禁止」「加髢禁止」(英正朝代) 등의 禁制는 이 興德王 禁制에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高度로 組織化된 貴族王國體制에서의 生産體系는 唐이라는 大國을 업고 高度로 發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服飾 뿐만 아니라 建築, 器用 등에도 그 奢侈性에서 보면 李氏王朝에 못지 않은 發達과 精巧를 자랑할 高度의 生産 技術을 가지고 있었음을 感知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禁制자체는 奢侈性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반 庶民과는 아무 關聯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奢侈性이 除去된 服飾構造 그 자체를 놓고 볼 때, 그 骨格 그 자체도 우리 것이 아니라 中國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 것은 日常性으로써 滅却되었거나 몇몇 品目에 僅僅히 엿보일 뿐이다. 여기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은 布의,

升數, 履(신) 襪(보선) 褄襻

袴, 短衣, 梳, 表裳, 內裳

등이다. 褄襻에 있어서도 日帝時代에 자취를 감추었다.

李朝末까지 남아 있던 것이 幞頭, 表衣, 內衣(中單), 變異된 靴, 腰帶, 霞帔로서의 褙, 儀式用으로서의 女子 花冠 등이다.

李朝中葉까지 남아 있던 것이 女子의 背子나, 男子의 搭護(帖裏)로 變異된 半臂 등을 들 수 있다. 高麗中葉에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女子의 裲襠이다.

이런 것도 中國 歷朝의 服飾 變遷과 관련있는 것이고, 다시 韓國에 있어서의 服飾 變遷의 종

요 時期인 高麗의 蒙古服屬 時期 이전까지만 해도 景德王代의 服飾이 어느만큼 殘存되었었다고 보는 바이다. 그것은 宋이 唐의 服飾을 習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 結 論

이 論文은 興德王 服飾禁制를 中心으로, 그 奢侈性을 除却한 그 服飾構造 자체를 考察함으로써 新羅 中·末期의 新羅 服飾을 再構할려고 한 것이다.

新羅 服飾은 그 原型에 있어서는 北方系統의 服飾, 즉 冠飾이 달린 冠帽와 衣·袴 分離의 上下服과 이 위에 걸치는 袍, 革靴 등 간단하면서 輕捷한 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에 4. 5世紀 中國服飾이 들어와 二重組織으로 存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服飾은 王과 王妃 및 貴族層에 限한 것이고, 일반 民衆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一般民衆은 애초의 舊俗 그대로를 墨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高句麗的인 띠가 있는 上衣 저고리는 高麗中葉까지 襲用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三國史記의 興德王 禁制를 資料로 하여 新羅 末期의 服飾을 禁制 안에서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新羅末期의 服飾은 唐制를 上層階級의 衣服으로 하여 그 下部構造는 國制를 그대로 襲用하고 있었다.

1. 頭飾은 軟帶幞頭(男子)이고 女子는 花冠을 썼다.
2. 女子의 頭飾은 얹는머리 男子는 상투型이다.
3. 上衣袍는 唐의 袍襴을 입고, 內衣는 긴저고리나 中單을 입었다. 또 中國制인 半臂(共通) 褙襠(女)을 입고 女子는 褾라는 領布를 어깨에서 앞으로 걸쳤다. 民衆은 國俗의 긴저고리, 袍를 입었다.
4. 帶는 銙帶이다. 女子는 褾襻, 民衆은 布帶를 하였다.
5. 下衣는 袴(바지, 男女共通)과 裳을 하였다. 官員의 袴는 女子의 裙과 같이 뒤가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
6. 男子는 皮靴(六合靴), 履, 女子는 線鞋 皮革履를 신었다.
7. 襪(男女共通)에는 끈이 있었다.

이러한 양식의 제도는 唐制와 國制 二重組織을 가지면서, 여기에 外國產인 唐土產을 제한하면서 國產으로 충족할 수 있는 土產物 使用을 强制命令으로 한 것이 이 禁制인 것이다.

이 根本的 動因은 累年의 旱害와 지나친 貴族階級의 奢侈를 막고 기울어지려는 社稷을 다시 일으켜 보려는 興德王의 원대한 포부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 때는 바로 新羅가 亡하기 80年前이다. 각지의 豪族이 强盛해지고 盜賊이 蜂起하기 시작한 때이다. 이 禁制로도 해이해진 紀綱을 바로 잡지 못하고 狂浪을 旣倒에서 돌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두고 두고 우리나라 奢侈禁制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 論文 전체의 構成으로 보아 전체의 衣服을 고찰하여야 하나 다만 禁制에 있는 것만 거론한 것이 못내 유감이다. <1971. 9. 15>

## 參 考 文 獻


金東旭：李朝前期服飾硏究，韓國硏究院，1963.

高麗圖經의 服飾史的硏究，延世論叢 第4輯，延世大學校 大學院，1971.

原田淑人：漢六朝の服飾，東洋文庫論叢，第23，東洋文庫，1937.

唐代の服飾，　仝　上，第51，仝，　1970.

王于淸：中國服飾史綱，中華大典編印會刊，1967.

王于淸：冕服服章之硏究，中華叢書編纂委員會

張末元：漢朝服裝圖樣資料，太平書局，1963.

江馬務：增訂 日本服飾史要，里野書店，1943.

其他

# An Examination of King *Hungdok's*(興德) Prohibition of Clothing

## ——Structural approaches to the Clothing of the Later Silla Dynasty——

by Tong-uk Kim

This essay aims at examining the King *Hungdok's* Prohibition of Clothing in order to mentally reconstruct the structure of the clothing of the later Silla Dynasty. The original clothing of Silla people was of Northern Asian style, that is to say, a *Byon* hat, two-piece Korean suit, *durumagi* (overcoat), and leather shoes. It was a simple and light dress. Chinese clothing was in use as well, although it was worn exclusively by kings and queens and queens and the aristocracy. Common people seem to have stuck to their native clothing. To enumerate some of the conclusions I have come to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relevant parts of the *Samguksagi*(三國史記) as to the King *Hungdok's* Prohibition of Clothing:

1. As for the head-wear, the *pokdu* was in use for men and the wreath for women: 2. The piled-on hair was women's hair-style and the top-knot men's. 3. The coat or jacket was Chinese-styled. For the underwear long-sleeved or loos-sleeved *jogori* or *chungdan* was worn. But the common people wore a long-sleeved *jogori* (coat) and *p'o* (overcoat). 4. For a pair of trousers *paji* and *sang* were in use. The *paji* worn by officials was split in the back as was in the case of the women's.

There were two traditons of clothing at the time: one of T'ang China, and the other of Korea. Chinese-styled dress was for the upper-class people and Korean-styled garment for the lowr-class people. The idea of King *Hungdok's* Prohibition of Clothing was to restrict the use of Chinese-made cloth on the one hand and to compell his people to use Korean-made cloth for their apparel on the other. The prohibition of clothing sprang from King *Hungdok'* aspiration to restore his dynasty that had been falling due to the repeated drought disaster and luxurious living of the aristocracy.

It was eighty years before the fall of Silla Dynasty that the Prohibition of Clothing was first in force. For all that, King *Hungdok* failed to revert the relaxation of national discipline. Nevertheless, his Prohibition of Clothing was highly valued by his successors as the model for expelling luxury.